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23
----------	-------

발의연월일 : 2026. 5. 19.

발 의 자 : 김미애 · 송언석 · 김위상
박상웅 · 김기현 · 조경태
나경원 · 김은혜 · 김민전
김 건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대집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보도·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에서 불법 시설물·적치물·위반건축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장기간 위험 상태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구도심 이면도로 등에서는 불법 점용 구조물과 적치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가 차도로 내몰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보행안전에 대한 긴급 대응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보행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집행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행정집행

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등).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대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相當한”을 “10일 이상의 상당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前項의”를 “제1항·제2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前2項에”를 “제3항에”로 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보행 공간에서의 불법 시설물·적치물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10일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집행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집행을 계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義務者が 前項의 戒告를 받고 指定期限까지 그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할 때에는 當該 行政廳은 代執行令狀으로써 代執行을 할 時期, 代執行을 시키기 爲하여 派遣하는 執行責任者의 姓名과 代執行에 要하는 費用의 概算에 依한 見積額을 義務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③ 非常時 또는 危險이 切迫한 境遇에 있어서 當該 行爲의 急速한 實施를 要하여 前2項에 規定한 手續을 取할 餘裕가 없을 때에는 그 手續을 거치지 아니하고 代執行을 할 수 있다.

③ ----- 제1항 · 제2항의 -----

④ -----

----- 제3항에 -----

